

# 물품공급계약서

## 1. 계약내용

한국웨스트(주) (이하"구매자")와 (이하"판매자")는 원사업자의 수급품 전반에 대한 즉, 자재.기기.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2. 계약의 목적물

가공품 또는 시중 구매품(공급 내역서 참조)

## 3. 계약의 조건

결제 조건: 한국웨스트 정기결제 또는 계약 당시 협의된 조건

결제 방법: 기업은행 구매카드 또는 계약 당시 협의된 조건

발주 방법: "구매자"의 발주서 송부

납품 방법: "판매자"가 직접 납품

납품 장소: "구매자" 1층 자재

## 4. 본 계약서는 상기 1, 2, 3의 계약 내용 외 기타모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내용에 준한다.

## 5. 첨부문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기본거래계약서1부

품질보증계약서 1부

비밀유지 계약서1부

윤리행동강령 확약서 1부

친환경부품 공급협정 1부

단가표는 하기의 조건을 따른다

"구매자의 표준품에 대해서는 단가리스트를 첨부하여 상호 날인 후 가격을 확정하고, 표준품이 아닌 경우 판매자의 견적서를 근거로 상호 협의된 단가를 개별계약 발주서에 기재하고 판매자는 발주서를 받는 즉시 이상 있을 경우, 구매자와 확인 후 계약이행을 진행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08 월 20 일

"구매자" 한국웨스트 주식회사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68(경서동)

사업자번호 : 119-81-02596

대표자 : 레킥 토마스 (Lekic Tomas)

"판매자"

주소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 거래기본계약서

## 제 1 조 (기본원칙)

- ①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기본계약 및 본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부칙조항"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칙조항이 우선한다.

##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제조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또는 "발주서"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 ①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제 4 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전자계약서, 발주서포함)를 "판매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메일 또는 팩스로 교부하고 "판매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판매자"는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구매자"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법정 휴일을 제외한 5 일 이내 서면(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신매체 가능)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시 서면은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유를 반드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구매자"는 계약서에 계약품목의 세부내용을 표기 없이 발주할 수 있으며 이때 "구매자"는 별도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는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 (개별계약의 내용)

- ①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위탁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한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5 조 (계약의 변경)

-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은 반드시 상호 날인하여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하고 개별계약(발주서)은 본 계약에 준 하므로 변경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에 의해 상호 날인 시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변경시 "구매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③ 제 1 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서로 귀책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 6 조 (사양 등의 지정)

- ① "판매자"는 "구매자"의 설계 또는 "구매자"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구매자"에게 납품한다.
- ② "판매자"는 제 1 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구매자"와 "판매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라 이미 제조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의 관리)**

- ① "구매자"는 목적물 위탁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를 "판매자"에게 대여한다.
- ②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여한 도면, 규격, 사양서류를 제 3자에게 누설 및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손실된 해당 서류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발주)**

- ① "구매자"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목적물을 위탁할 때, "판매자"가 목적물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 ②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목적물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9 조 (사급재의 지급)**

- 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매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유·무상 구분을 결정하고, "구매자"는 사급재가 유상일 경우 그 단가를 "판매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급재의 지급일시, 장소, 대금지불방법, 로스율 등을 정한다.
- ④ "판매자"는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구매자"명의로 귀중으로 표시한 수령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판매자"는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구매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⑥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시에 의거 사급재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사급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 4 항에 준하는 통지 및 제 5 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판매자"는 무상사급재의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구매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⑧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구매자"의 사급재로 인하여 목적물에 불량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가 짐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 ⑨ "판매자"가 제 5 항 및 제 6 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과 그 확대된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의 경우는 "구매자"가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판매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판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설비·계측기등의 양도 또는 대여)**

- ① "구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및 검사 시험을 위한 계측기, 게이지, 치공구류(이하 "설비·계측기등"이라 한다)등을 "판매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②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제 1 항에 의한 설비·계측기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여 및 양도 받은 설비, 계측기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보관증등의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발행할 책임을 진다.

- ④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구매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설비.계측기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 10 조를 준용하고, 설비.계측기등의 대여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 11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제 12 조 (사급재 및 설비.계측기등의 관리)**

-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공.양도 또는 대여한 사급재 및 설비.계측기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을 소정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판매자"는 사급재 중 특히 무상사급재 및 대금 완제 전에 양도받은 설비.계측기등에 대하여 "판매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구매자"의 소유권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판매자"는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설비.계측기등에 대한 "구매자"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구매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판매자"는 사급재, 금형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 4 항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구매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급재, 설비.계측기등에 대한 처리는 사후에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⑥ "판매자"는 설비.계측기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점검 및 교정을 한다.
- ⑦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비.계측기등의 점검 및 교정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 13 조 (단가)**

- ① 목적물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절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 1 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매자"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 ③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 1 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 14 조 (납기)**

납기란 "판매자"가 개별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5 조 (납품)**

- ① "판매자"는 목적물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구매자"가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판매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이상납품이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 조 (관세환급)**

“구매자”가 발주한 품목 중 관세환급 대상품목에 대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관세환급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시험검사)**

- ①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하여 목적물의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험검사를 할 경우 KS, MIL 등의 근거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
- ③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지한다.
- ④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시험검사에 “구매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제 18 조 (특수공정의 관리)**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특수공정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협조를 할 수 있다.

- 1. 표면처리
- 2. 열처리
- 3. 용접 등 취약기술

**제 19 조 (목적물의 수령 및 검사)**

- ① 물품의 검수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검수인이 “구매자”의 지정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며, “구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검사시험표를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반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구매자”는 “판매자”가 목적물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면 “판매자”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수의 기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개별계약서 체결 시 별첨에 명시된 검수기준서 또는, 승인도에 의하고 검수결과 물품이 제작사양과 상이 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정품교환 또는 보관을 요청하거나, 손해액만큼 감가하여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 ③ “구매자”는 납품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법정 휴일을 포함 하지 않은 10 일 이내 검사 결과를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 20 조 (부족분, 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 ① “판매자”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자”는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판매자”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수 가능한 상당기일을 지정하여 인수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는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와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단, 초도품, 크레임부품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 ③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 2 항의 기간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판매자”에게 반송 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④ “구매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 2 항에서 정한 기간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판매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구매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동의 없이 “구매자”의 관련업소에 판매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1 조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 19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대금 지급)**

-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현행 “구매자”의 대금지불 업무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판매자"는 납품 후 대금 수령을 위해 인수 확인된 거래명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구매자"에게 미리 결제계좌 신청서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며 이외 설비성 구매품, 도면 및 사양서 기준 제작품의 경우는 "구매자"가 검수합격 판정을 해야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제 23 조 (대금의 지급수단)**

- ①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구매자"는 제 1 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금융기관의 명칭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 3.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제 24 조 (착수(선급)금, 하자담보)**

- ① 개별계약시의 착수(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착수(선급)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는 그에 상당하는 증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② 개별계약시의 하자담보가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이행에 따른 이행증권증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③ 24 조 제 1 항,2 항의 증서는 다음과 같다
  - 1. 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전기통신공사협회가 발행하는 보증서
  - 2. 보증보험증권
  -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 4. 국채 또는 지방채
  -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 7. 현금

**제 25 조 (지체상금)**

- ① "판매자"가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3/1000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구매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제 26 조 (대금의 상계)**

- 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지급품의 대금 및 기타 "판매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의 도래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그 명세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 27 조 (품질보증)**

- ① "판매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제 6 조의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구매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 1 항의 품질보증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판매자"는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을 할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제 28 조 (하자담보책임)**

"판매자"는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크레임 보상협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 29 조 (제조물 책임)**

-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위탁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각각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책임을 진다.
- ③ "구매자"가 제 2 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비용을 보상한다.
- ④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 2 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의 협조한다.

**제 30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 ①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판매자"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및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다.
- ②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제 1 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31 조 (발주부품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 )**

- ① "판매자"는 발주부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제안으로 발주부품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할 수 있다
- ②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구매자"는 발주부품의 제작,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제작기술.공법.자재 및 생산관리 또는 품질보증 등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 ④ 지도.조언을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의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검사할 필요할 있을 경우 "판매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2 조 (내국신용장 개설)**

"구매자"는 수출용 목적물을 "판매자"에게 제조위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자"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한 날부터 15 일 이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제 33 조 (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 ① "판매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구매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구매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판매자"는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제 3 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구매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판매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판매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판매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구매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구매자”와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자”의 사전 허락 없이 “판매자”가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 없이 “구매자”에게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판매자”는 “판매자”의 사양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34 조 (상표 표기 및 포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의 표기 및 포장상태는 “구매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5 조 (재하도급)**

-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제조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② “판매자”는 제 1 항의 경우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판매자”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 36 조 (영업비밀의 유지)**

- ①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별도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여 1 부씩 보관한다.
- ②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 1 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7 조 (권리의 양도)**

“구매자”와 “판매자”는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 38 조 (계약의 해제.해지)**

- ①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해산, 영업을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구매자”가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판매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판매자”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제 1 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 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9 조 (거래정지의 예고)**

제 38 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0 조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 ①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제 38 조제 1 항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 대여품 및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매자"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계측기등과 목적물의 재고 및 유상사급재를 제 3 자에 우선하여 "구매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목적물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 기준으로 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1 조 (손해배상청구)**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42 조 (잔존의무)**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1. 제 28 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2. 제 29 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 3. 제 33 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4. 제 36 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43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기본계약에 관하여 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고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거래관습에 따른다.
- 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판매자"가 "구매자"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공서로부터 자격의 취득(인.허가)이 필요할 경우, "판매자"의 책임하에 취득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조세공과 등 제반비용도 "판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44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 년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계약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이 계약의 실효 시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계약은 상호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서명날인(전자서명포함)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④ 본 기본계약서 내용과 개별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개별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며 개별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해석한다.

# 품질보증계약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기본거래계약서에 의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계약(이하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 제1조(기본정신)

본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구축, 고객만족을 구축하는 품질보증체계를 발전시켜, 공동책임하에 제품(부품)의 품질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제2조(품질보증)

- 1)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일관된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여 제조과정 중 또는 완료 후 "구매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 2) "판매자"는 "1)" 항의 품질보증에 있어 "판매자"가 구입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 3) 납품 후 1 년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하고, "판매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구매자"의 생산과정 중 손실이 발생하거나 완성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는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다.
- 4) "판매자"는 "구매자"가 불합격 처리하여 반품한 물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5) "판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자"의 외주업체가 "구매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

## 제3조(도면의 사전검토 의무)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물품의 품질, 규격, 재질, 성능, 포장, 표시, 인도조건등을 기재한 재료규격 혹은 구매규격(이하 "도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여 "구매자"가 제시하는 도면에 대한 "판매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 제4조(품질보증활동의 이행)

- 1)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물품 도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 이행을 위한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양산 이전 단계
  - 품질관리공정도(사용재료의 종류 및 공급업체 기록이 포함된 작업표준서)
  - 검사규격(검사방식, 검사설비 등), 검사성적서(자체 TEST Report 및 성적서)
  - 개선대책서(필요 시, 선정 혹은 공정 감사 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
- 3) 양산 및 납품 단계
  - 품질목표 및 달성방안
  - 공정변경 신청서(사유 발생 즉시)
  - 시험, 검사 성적서 (매 로트 납품 시)
  - 특채 요청서(사유 발생 즉시)
  - 품질개선 대책서("품질 이상 통보서" 접수 시)

## 제5조(불합격시의 조치)

- 1) 검사 결과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조속히 부족수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의 불합격 사유가 경미한 경우 "구매자" 는 그 불합격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는 최초 계약된 약정 단가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합의에 따른다. "판매자"는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행하여야 한다.
- 2) "판매자"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된 제품의 특채사유 발생시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협의 하에 특채처리 진행 시 납품가의 7% 공제 후 매입한다.)

- 3) "구매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 시 "판매자"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불합격품을 확인 인수하여야 하며, 동기간 경과 후 "구매자"는 불합격한 품목에 대하여 보관상의 책임이 없다.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한내의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 폐기 의견 전달 후 자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 4) "판매자"는 불합격되어 반품된 제품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판매자"가 납품한 후 물품에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지체 없이 "판매자"에게 통보하고 "판매자"는 신속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요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사후의 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고객불만 처리 및 제조물 책임)**

- 1)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함에 있어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판매자"는 발주품의 도면 또는 규격사양이 "구매자"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발주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한 도면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동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구매자"와 "판매자"는 제 2 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 4) "판매자"는 "구매자"가 정하는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상태 평가)**

- 1) "구매자"는 거래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체계, 제조공정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도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2) "판매자"는 "구매자"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사후 개선 및 조치 결과를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기밀유지의 책임)**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간 양해 없이는 이 계약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서류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제재조치)**

- 1) "구매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에게 요구한 서류를 "판매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내용을 이행 안 할 경우 "구매자"는 사전 경고 후 기본계약 및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 2) "구매자"는 제 7 조(품질보증 상태평가)에 따라 이 계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며 "구매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 조치 혹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기술의 부족, 관리 능력의 부족 및 국내 제반 여건 때문에 협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신고하여 상호 합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전 양해를 받은 사항은 이 조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또는 연장 거절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제11조(기 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간의 합의로서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르며,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각각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비밀유지계약서

“구매자” 대표이사 박성호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는 대표권이 있는 자로 한다.

## 제 3 조 (비밀 정보)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2.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대외비”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15 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따른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15 일 이내에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관련 임직원" 외에는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 3 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3.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위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위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4.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 년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5 년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 제 6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1.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 7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8 조 (보증)**

1.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 3 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1.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목적사업"이 종료 또는 Drop 된 경우, iii)"정보제공자"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

1.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 3 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2 조 (구속력)**

1.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 3 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소제기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 윤리 /행동 강령 협조 및 동참 약속서

당사는 귀사에서 선포한 「FESTO 그룹사의 윤리 및 행동강령」에 대한 도입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으며, 귀사가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업무수행과 투명성에 입각한 정도 경영 정착화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첫째,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법 및 국제법과 ILO 등의 국제협약을 준수하며 특히 무기제조 등의 반 인류적인 행위에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부당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당사는 업체간의 담합, 협정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는다.
4. 당사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고 납기 준수에 최선의 노력한다.
5. 부당하고 비윤리적 방법을 통해 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거래 중단, 계약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6. 한국웨스토 임직원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 할 경우 귀사의 Local Compliance officer (Tel: 02-850-7121, E-mail : kr0leesh@kr.festo.com)에게 통보한다.



## 윤리 , 행동 강령

### 서론

Festo Group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오랜 전통의 가족 소유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평판을 유지해 왔습니다. Festo Group은 정직성을 강조하며, 높은 윤리 및 법률 준수 기준을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Festo는 본 행동 강령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Festo 직원을 포함해 전체 통상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목적과 적용 범위

본 행동 강령의 목적은 모든 임원/관리자와 직원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직한 업무 수행에 관한 Festo Group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 행동 강령은 직원과 모든 제 3 자에게 Festo Group이 항상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적용 법률을 준수하고 법적인 규칙과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개인이나 회사의 관점에서 불합리하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 경영진의 지시와 상충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회사 경영진과 모든 직원은 적용 법률을 준수하고 법칙과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곧 Festo Group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 행동 강령은 Festo Group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지 법률에 의거한 규칙이 본 행동 강령보다 더 엄격할 경우에는 더 엄격한 현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본 행동 강령은 회사의 경영진과 각 임원 및 Festo Group의 전 직원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제 3 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Festo Group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룹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행동 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 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 의한 행동 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징계 조치(법률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취해질 수 있는 기타 모든 조치 포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준수 책임자(Compliance Officer)

Festo Group의 경영 이사회(management board)는 최고 이사회(supervisory board)의 동의를 받아 경영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준수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준수 책임자는 본 행동 강령의 시행 및 집행을 감시하고, Festo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의 행동 강령 시행을 지원하고, 본 행동 강령에 따른 지침을 수립 및 개정하는 데 참여하고, 본 행동 강령의 시행 및 집행에 관한 모든 문의를 위한 연락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책임을 집니다. 그룹의 내부 감사팀도 감사를 통해 본 행동 강령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고 파악된 모든 위반 사항을 준수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3.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켜야 할 행동

#### 3.1 법률, 사내 규칙 및 규정의 준수

모든 Festo Group 사업장은 적용 법률, 규칙 및 규정과 최소한의 산업 표준과 UN 및 ILO(국제노동기구) 규약과 모든 내부 규칙 및 규정과 기타 모든 관련 규칙(이하 "규칙"이라 총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칙 위반에 대해 알게 될 경우에는 즉시 준수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3.2 공정 경쟁

Festo Group은 공정 경쟁 규칙을 준수하며, 자유 시장과 완전 경쟁의 원칙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외의 모든 시도를 지지합니다. 모든 사업 활동은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과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Festo 그룹사는 적용되는 규칙을 위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문이나 기타 이익을 모두 거부해야 합니다.

##### 3.2.1 반경쟁 계약 및 합의

경영진이나 직원은 경쟁사와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율하거나 달리 담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논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Festo 그룹사는 (a) 경쟁사와 경쟁을 하지 않거나 (b) 공급자나 고객을 보이콧하거나 (c) 허위 입찰을 하거나 (d) 고객, 구역 또는 생산 프로그램을 분할하거나 (e) 산업을 독점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 또는 해석되거나 달리 불법적일 수 있는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유형의 협정, 합의 또는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금지 규정에는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경쟁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논의나 비공식적인 "신사 협정" 또는 "공모적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3.2.2 뇌물 수수

Festo Group은 제품의 품질, 혁신 능력, 관계의 정직성 및 직원의 역량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파트너나 그 직원 또는 대표자나 공직자 또는 정치인 등을 비롯한 제 3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 경영진과 Festo Group 직원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조달할 때 우대를 받는 대가로 비즈니스 파트너나 그 직원 또는 대표자나 공직자 또는 정치인 등을 비롯한 제 3 자에게 혜택을 제안,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회사 경영진과 Festo Group 직원이 유통업체나 거래처로부터 본 행동 강령에 위배되는 금품이나 기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제안 받을 경우에도 준수 책임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 3.2.3 지불

법적으로 유효하고 허용되는 양도 계약이나 상환 의무(mandatory redemption)가 있지 않은 한,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Festo 그룹사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파트너의 주 사업 소재지가 위치한 국가에서 각 계약 파트너에게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 지불은 금지됩니다. 앞의 문장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적법한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할 경우에는 소액 현금 지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 위배되는 기타 모든 지불 및/또는 지불 합의에 대해서는 준수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3.2.4 상업적 인센티브

실적에 근거한 커미션, 보너스(보너스가 포함된 서면 공동 계산 계약 포함), 할인과 재화 및 서비스의 무료 제공 등은 전형적인 상업적 인센티브입니다. 해당 인센티브는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만 제공하거나 수락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윤리적인 법으로만 제공 또는 수락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거절하거나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사원, 부동산 중개사, 컨설턴트 또는 기타 중개인을 비롯한 제 3 자에게 커미션의 형태로 지불한 보상은 수행된 업무에 적합해야 하며, 그 내역을 제공된 서비스의 목적과 기한에 관한 적절한 상세정보와 함께 서면으로 완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3.2.5 혜택의 제안 및 제공

회사 경영진과 Festo Group 직원은 적용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선물, 증정품, 초대 및 기타 유사한 혜택은 그 가치나 비즈니스 상황 등을 이유로 수령인이 독립성을 의심받거나 수령인이 해당 혜택의 존재를 숨기거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제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습적인 사업 관행을 벗어난 향응,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금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됩니다.

행사 또는 활동 초대는 업무상 통상적인 관행이거나, 규모 또는 유형이 적절하거나, 분명한 업무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선 행사 초대나 자선을 목적으로 한 기부는 본 3.2.5절의 첫 문단에 명시된 원칙을 포함한 본 행동 강령을 준수할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공직자나 공무원에게 초대를 제안하거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업무 목적을 위한 식대 및 접대비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고 금액이 합당해야 합니다.

Festo Group이 소유한 항공기(소형 비행선, 기구)를 이용한 관광 행사에 외부인을 초대하는 것은 해당 행사의 규모, 형태 및 범위가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허용됩니다.

### 3.2.6 혜택의 요청 및 수락

회사의 임원/관리자와 Festo Group 직원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의무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원/관리자나 Festo Group 직원은 절대로 자신의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사적인 혜택(무형적인 이익 포함)을 요청, 수락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3.2.5절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의 행사 또는 식사 초대나 기타 소정의 상징적인 선물을 때때로 수락하는 것은 수령인의 독립성이 의심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평범하

고 통상적인 선물은 때때로 제공되는 소정의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선물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초대를 수락할 때는 행사에 분명한 업무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업무 목적의 식사 및 접대는 금액과 형태가 적절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자선 행사에 초대를 받거나 자선 목적을 위한 기부를 제안 받은 직원은 특히 3.2.5절의 첫 문단에 명시된 원칙을 비롯한 본 행동 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초대 또는 기부를 수락해야 합니다.

현금 선물을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원/관리자나 직원이 본 행동 강령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본인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 또는 혜택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안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선물 또는 혜택을 원칙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해당 제안은 즉시 준수 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3.2.7 기부 및 후원

기부 및 기업 후원은 항상 투명해야 합니다. 즉, 기부 또는 후원의 수혜자와 구체적인 용도를 공개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후원은 합의된 고려사항을 감안할 때 적절해야 합니다.

### 3.3 지속 가능 경영과 환경 영향

Festo Group은 지속 가능 경영과 환경 친화성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Festo Group은 자원의 희소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인지합니다. 전 세계 Festo 그룹사에 적용되는 모든 환경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과 Festo Group 직원 각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3.4 포용과 기회 평등

Festo Group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국적, 문화 및 신앙이 다양한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들과의 교류는 포용, 존중 및 개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 민족, 출신 국가, 장애, 인종, 종교, 신앙,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 나이 또는 기타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징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 괴롭힘 또는 비하 행위는 금지되며,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괴롭힘 행위는 금지되며,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를 피할 수 있었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용납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관리자는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3.5 보고 및 문서화

회의록과 보고서는 특히 제 3 자를 위해 작성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정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모든 필요한 시스템과 호환되는 방법으로 제 때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기록해야 하며, 발기인 또는 작성자와 만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Festo Group을 대신하여 체결한 모든 구두 및 서면 계약 및 협약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거래는 적용되는 법규정과 Festo Group의 사내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3.6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Festo Group은 공급업체의 모든 제안을 공정하고 공개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사적인 이유를 비롯한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로 공급업체를 선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모집을 실시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제안을 한 입찰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단, 다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품질, 서비스,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신용도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진 논의 및 심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제 3 자가 해당 결정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Festo Group은 자사의 공급업체, 고객 및 기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행동 강령이 표방하는 가치관을 존중하고 각사에서 직접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Festo Group은 장기 공급업체가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 행동 강령에 규정된 원칙과 금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계속 위반할 경우 해당 관계를 조기에 중단할 권리를 보유하며, 특히 뇌물 수수, 부적절한 혜택 제공, 강제 또는 아동 노동과 관련된 사안에는 더 엄격히 대응합니다.

### 3.7 정보의 기밀 보장과 정보 보호

Festo Group과 그 비즈니스 파트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정보가 이미 대외에 널리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개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또는 규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Festo Group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틀 안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정보의 기밀 유지

의무는 고용 관계가 해지된 후에도 지속됩니다.

기밀 정보를 사적인 용도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관리자와 모든 직원은 사내 지침에 따라 기밀 정보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밀 정보, 공식 문서 및 정보 저장 매체를 제 3 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안전 장치의 유지에는 가장 높은 전문적 기준과 품질을 적용해야 합니다.

#### 4. 동료들 대할 때 지켜야 할 행동

##### 4.1 관리 문화

회사의 임원/관리자는 각자의 부하 직원을 책임져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관리자는 모범적인 행동, 성과, 포용성 및 사고 능력을 보임으로써 직원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Festo Group은 회사의 임직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esto Group은 자사 임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에 투자하고 그들의 헌신과 성과를 장려하며 보상합니다.

##### 4.2 공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모든 국가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해, Festo Group은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룹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아동 노동을 규탄합니다.

Festo Group은 전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Festo Group은 모든 회사 사업부에서 특히 제품 디자인과 직장 안전의 유지에 관한 높은 품질 기준을 꾸준히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프로세스, 시스템 및 운영 리소스는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모든 적용 법률 및 내부 규정과 화재 및 환경에 관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4.3 이해 관계의 상충 방지

Festo Group은 회사의 임원/관리자와 직원들이 각자의 직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또는 충성 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Festo 그룹사와 회사의 임원/관리자 또는 직원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서로 비즈니스 거래나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 (ii) 회사의 임원/관리자나 직원이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하거나 다른 회사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또는 (iii) Festo Group의 경쟁사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회사의 임원/관리자 및 직원은 Festo Group을 위한 비즈니스 결정이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즈니스 관계는 준수 책임자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 5. 행동 강령의 시행

회사의 임원/관리자는 각자의 부하 직원들에게 본 행동 강령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임원/관리자는 직원이 본 행동 강령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행동 강령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직원의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리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관리자는 적용 법률의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잠재적인 위반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고 준수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Festo Group은 회사 직원들에게 적용 법률과 본 동 강령의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주제와 위험 분야에 관한 교육 과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구심이 생길 경우, 회사의 임원/관리자 및 직원은 각자 자신의 행동이 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 책임자는 이에 관한 모든 문의에 답할 수 있습니다.

Festo Group의 전 직원은 본 행동 강령의 내용 또는 해석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위반사항의 신고 시에는 직속상사나 준수 책임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행동 강령에 관한 문의와 위반 사항의 신고를 위한 직통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 정보는 인터넷을 참조하십시오.

직원이 직속 상사나 준수 책임자에게 본 행동 강령의 위반 사안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해당 위반 사안을 신고한 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직통 전화는 제 3 자가 Festo Group의 불법 행동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친환경 부품 공급 협정

본 협정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세계 지역별 환경법규 대응과 “구매자”와 “구매자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각종 환경기준 충족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함이며,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개발,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이 사용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계 지역별 환경법규 대응을 위한 “구매자”와 “구매자의 고객사” 환경기준을 준수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고객사”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국내공장 및 해외공장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RoHS II [납(Pb),수은(Hg),카드뮴(Cd) 6 가 크롬(Cr(VI)),플리브로민화바이페닐(PBB),폴로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PBDEs), 0.01 wt% , 카드뮴 0.1wt%,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enzylbut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이상 4 개의 프탈레이트계 물질로 최대 함유 허용치는 0.1 wt% (1,000 mg/kg))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3.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구매자의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부품이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생산, 포장 및 운송될 수 있도록 내부 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4. “판매자”는 환경경영과 동시에 투명경영을 실시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선진기업으로서 “구매자”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한다.

### 글로벌 환경경영 방침

“판매자”는 기업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환경방침을 제정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1. 환경을 기업의 핵심 성공요소로 인식하고 능동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창출 한다.
2. 환경 친화적 부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
3.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적 가능한 사용과 오염물질 저감에 적극 노력한다.
4. 전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협력사 환경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 한다.
5.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며 환경경영 추진 및 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그 성과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 방침

“판매자”는 글로벌 환경경영방침에 입각하여 전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부품 또는 재료에 [RoHS II (납(Pb), 수은(Hg), 카드뮴(Cd) , 6가 크롬(Cr(VI), 플리브로민화바이페닐(PBB),폴로브로민화다이페닐에테르류(PBDEs),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Benzylbutyl phthalate (BBP), Dibutyl phthalate (DBP), Diisobutyl phthalate (DIBP)] 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자주적으로 준수한다.

1. “판매자”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금속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에 납품하는 부품 또는 재료에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한다.
3. “구매자”와 “판매자”는 중금속 규제 대응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하며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 한다.
4. 중금속 글로벌 스탠다드방침을 추진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금지물질 2종(노말렉산, 벤젠) 사용 여부 (단, 실험/연구용 사용일 경우 제외)
6. 규제물질 7종(메탄올, TCE, 시클로헥사논, 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니트로메탄, 디클로로메탄) 사용 여부
  - 1) 규제물질은 공정 특성상 대체가 불가할 경우 or 혼합물로 사용시 당사 신고 後 사용일 경우는 제외
  - 단, 규제물질 취급 공정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밀폐구조, 자동화 사용 시설에 한함
  - 2) 제한물질 사용시엔 국소배기시설/보호구 착용/특수건강검진/MSDS 교육 실행 완료時 양호 판정

## #별첨1. 단가표

본 단가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다.

20 . . . . 발주분부터 적용

NO.	품목번호	타입	1 회 발주량	단가(₩)	납기
-----	------	----	---------	-------	----

별도 가격표를 적용함.